

김해서부경찰서 &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
교통안전베테랑사업 업무 협약서

김해서부경찰서와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이해와 신의로 상호 협조하여 양 기관의 업무 수행 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 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노인 교통안전 인식제고와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김해시 서부권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상 호 신 의)

양 기관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.

제 3조 (합 의 사 항)

1.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2. 양 기관 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상황은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 4조 (협 력 사 항)

양 기관은 제 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분에서 협력한다.

1. 지역 교통안전망 구축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한다.
2. 교통안전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한다.
3. 김해 서부권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킨다.

4. 어르신 교통사고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.
5.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.

제 5조(기 타 사 항)

1. 본 업무협약은 김해서부경찰서와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.
2.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3. 본 업무협약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제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.

제 6조 (협 약 해 지)

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업무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기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6. 27.



김해서부경찰서
GIMHAE SEOBU POLICE STATION

김해서부경찰서
서장 김 균

김 균



김해시복지재단
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

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
관장 황 성 철

황 성 철